

제 690 호

1978.12.2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경상천

편집 : 문화공보관 김인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행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례

제 1293 호 : 서울특별시립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3
--------------------------------	---

○ 운영

제 493 호 : 서울특별시경찰행정감사시행규정	3
---------------------------	---

○ 고시

제 671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적승인	12
-------------------------------	----

제 67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2
---------------------------	----

제 674 호 : 1979년도 서울특별시세 종별 세율	13
-------------------------------	----

제 675 호 : 도시계획 사업(학교) 시행허가	14
----------------------------	----

제 676 호 : 도시계획시설(옹벽공사) 지적승인	15
-----------------------------	----

제 677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16
----------------------------	----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678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행자지정	20
제 679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허가	23
제 68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과지적승인	24
제 681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및도로) 변경결정및지적승인	24
제 68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25
제 683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26
제 684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허가	31
제 685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허가	32
제 686 호 :	노거수지정해제	32

◎ 공 고

제 477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공람공고	33
제 478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33
제 47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완료공고	34
제 480 호 :	제 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	34
제 482 호 :	영동 1,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공람공고	34
제 483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35
제 486 호 :	K 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35
제 487 호 :	전기용품제조업체취소	36
제 488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36
제 48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37
제 490 호 :	도시재개발사업무교체 4, 5지구규약및사업시행계획변경 공람공고	38
제 491 호 :	도시재개발사업광화문구역사업시행계획변경공람공고	38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병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団

1978년 12월 22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293 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제 1조 (설치) 시립형신(아동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 및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조 (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병원의 사업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 3조(준용)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 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 1조에 해당되는 시립병원의 재산은 이 특별회계의 소관으로 한다.

한령

서울특별시 경찰행정감사 시행규정
증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团

1978년 12월 22일

◎ 서울특별시훈령 제 496 호

서울특별시경찰행정감사시행규정

서울특별시 경찰행정감사 시행규정

39-4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p>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경찰행정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조 (기능) 서울특별시 경찰국 행정감사반 (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행정감사규정 (대통령령 제 6169 호) 및 내무부소관 행정 감사규정 (내무부령 제 44 호)에 의거한 감사기능을 수행한다.</p> <p>제 3조 (감사의 조정통제) ① 경찰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자체감사는 이를 일원화하여 연중 청기감사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일괄 실시도록 한다.</p> <p>② 상부지시 또는 진급을 요하는 사항 (이하 "불시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기능별 관하감사 (지도방문, 검열, 점검 등)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실시 5일전에 다음 감사 실시내용을 경찰국 경무과장 (기획감사계)에게 제출하여 사전 조정통제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실시내역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감사목적 및 근거2.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3. 감사사항	<p>4. 감사실시 방법</p> <p>5. 감사일정</p> <p>6. 감사관 편성</p> <p>③ 제 2 항의 불시감사를 위한 조정통제시는 경무과 및 주무과의 문서번호로 관하에 하달하여야 한다.</p> <p>④ 피감사기관인 관하자 경찰서는 본 규정에 의거 조정, 통제를 받아 하달된 감사의뢰의 감사에 대하여는 이에 불용할 수 없다.</p> <p>제 4조 (피감사기관) 감사대상기관은 경찰국 각파 직할대, 경찰서, 파출소 (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로 한다.</p> <p>제 5조 (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반장, 부반장 및 감사관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경무과장으로 하고, 부반장은 경무과 기획감사계장이 되며, 감사관은 당해 사무에 능통한 경감 또는 경위급증에서 감사반장의 추천에 의하여 경찰국장이 지정한다.</p> <p>② 감사반의 서무는 경무과 기획감사계에서 처리한다.</p> <p>제 6조 (감사반장 및 부반장의 임무) ① 감사반장은 감사반을 지휘 감독하며 감사수행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감사진행 및 강평계획을 피감사기관의 장과 협의한다.</p> <p>② 부반장은 감사반장 유고시에</p>
---	--

<p>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7조 (감사관의 구분) 감사관은 경무감사관, 보안감사관, 교통감사관, 경비감사관, 학천감사관, 수사감사관, 형사감사관, 정보 1 감사관, 정보 2 감사관, 회계감사관 및 장비감사관으로 구분한다.</p> <p>제 8조 (감사관의 자격) ①감사관은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감사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업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이해력을 구비한 자 2. 신체 건강한 자로서 용기와 인내력을 구비하고 책임감이 확정한 자 <p>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관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임자 (현제급 임용후 2년 미만인 자) 2. 전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p>제 9조 (감사관의 임기) 감사관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p> <p>제 10조 (감사관의 권한) ①감사관은 경찰국장을 대리하여 위임받은 범위내의 권한을 행사한다.</p> <p>②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감사자 일회하에 통인할 수 있으며 감사사항에 대하여 판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당해 문서장 또는 대리인을 일회</p>	<p>하게 할 수 있다.</p> <p>③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관으로부터 확인 또는 질문서를 정취할 수 있다.</p> <p>제 11조 (감사관교육) ①감사반장은 감사 시행전에 감사관에 대하여 감사시 향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각 과장은 감사관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 12조 (경무감사관) 경무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인, 평수, 문서, 수발, 발간 및 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 2. 경찰관 및 소속공무원의 일용,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 훈련 및 무술지도 군무 평정에 관한 사항 4. 운영계획 및 실사분석조직, 정원직제 및 경찰통제에 관한 사항 5. 경찰법령집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강의 단속, 비행에 대한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무운영에 관한 사항 <p>제 13조 (보안감사관) 보안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구조사, 통속경찰, 충포 화약류의 단속, 즉결심판의 청구 및 노유 병상자의 보호, 기타 행정
---	---

<p>경찰에 관한 사항</p> <p>2. 범죄의 미연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외근경찰에 관한 조사 지도와 소년보도, 기타 예방경찰에 관한 사항</p> <p>3. 익사 및 폭발물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p> <p>4. 인허가에 관한 사항</p> <p>5. 청소년선도에 관한 사항</p> <p>6. 타기판 교탈사건에 관한 사항</p> <p>7. 기타 보안업무운영에 관한 사항</p> <p>제 14조 (교통감사관) 교통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p>1. 교통경찰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교통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p>2. 교통경찰관 선발기준 실사실시 및 일상 교양에 관한 사항</p> <p>3. 교통지도 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p> <p>4. 운전면허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p> <p>5. 차량행정처분 집행에 관한 사항</p> <p>6. 교통사고 수배 및 법규 위반 차량 행정처리</p> <p>7. 기타 교통업무에 관한 사항</p> <p>제 15조 (경비감사관) 경비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p>1. 경호 경비에 관한 사항</p> <p>2. 일반경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3. 비상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에</p>	<p>관한 사항</p> <p>4. 다중 범죄 진압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5. 비상소집 실시 및 병력동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6. 검문소 및 야간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p> <p>7. 야간운행증 발급에 관한 사항</p> <p>8. 민방위 협조업무에 관한 사항</p> <p>9. 청원경찰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p> <p>10. 경찰 통신조사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p> <p>11. 통신자료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p> <p>12. 유무선 통신 기체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p>13. 교환원 교양감독에 관한 사항</p> <p>14. 기타 경비 및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p> <p>제 16조 (작전감사관) 작전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p>1.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2. 전시 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3. 경찰작전부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p> <p>4. 전투경찰대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p> <p>5. 중요시설 방어계획 및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p>
--	---

<p>6. 항로예비군 무기 및 탄약 관리에 관한 사항</p> <p>7.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p> <p>8. 기타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p> <p>제 17 조(수사감사관) 수사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사연구 및 기획 사법경찰관의 지도 범죄정보 및 형사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범죄 통계 및 분석 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치장 관리 및 지문 채취에 관한 사항 4. 형무사법 처리 및 소재 수사에 관한 사항 5. 타기판 고발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6. 참고인 여비 및 경안비 지급에 관한 사항 7. 우범자 관찰 보호에 관한 사항 8. 세생활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p>제 18 조(형사감사관) 형사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혐의자에서 처리한 각종 범죄 처리에 관한 사항 2. 혐의 대기 피의자 및 일시 보호자 처리에 관한 사항 	<p>3. 보호실 관리 및 피의자 보호에 관한 사항</p> <p>제 19 조(정보1 감사관) 정보1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 경찰에 대한 조사 연구 기획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원조사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정보 기록 및 정보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 수집 및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p>제 20 조(정보2 감사관) 정보2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공 경찰 업무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사회 안전 업무 및 요시에 대한 사항 3. 대공 정보 수집 및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사 경찰에 관한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의사 소관 신원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의사 철보 수집 및 분석 정
--	--

39-8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가에 관한 사항	사항
7. 의사 공작 업무에 관한 사항	3. 부속품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사 범죄 및 요시에 관한 사항	③ 무기탄약
9. 기타 의사 업무에 관한 사항	1. 무기탄약 및 무기고 관리에 관한 사항
제 21 조 (회계감사관) 회계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제 23 조 (감사평정표) ①경찰국 각 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감사상 필요한 사항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상 의견을 구실한다.
1. 세출 예산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각과장은 소관 감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항목별 평정표를 작성하여 감사 시행 20일전까지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감사관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세입 및 원천세징수에 관한 사항	④평정표는 경찰 기본 업무외에 지역별 계절별 및 기타 특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도급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제 24 조 (수감표) ①피감사 기관에서는 수감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사 당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보비 출납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7. 유가 증권에 관한 사항	
8. 기타 금전 회계에 관한 사항	
제 22 조 (장비감사관) 장비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① 물품회계	
1. 물품 출납 및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2. 국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차량	
1. 차량 유지 관리 및 정비 전반에 관한 사항	
2. 유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② 전황의 감사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계산서, 증빙서, 장부, 현금, 물품, 기타)를 제시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 25 조(감사상 준수사항) 감사를 할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검사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감사사항에 대하여 과소 과대 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의 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감사중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감사 시행중 지독한 비밀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목인하여서는 안된다. 7. 감사에 있어서 작성된 서류로서는 신중한 주의로서 정리하고 상당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p>8. 감사관이 감사에 관련하여 비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더욱 엄중 문제한다.</p> <p>제 26 조(감사진행 순서) ① 종합감사의 감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검사 기관의 간부급 신고 2. 점검 또는 훈련 3. 짐무 경영 4. 판내 현황 정취 5. 각기능별 감사 시행 <p>② 점검 훈련 및 짐무 경영은 피검사 기관의 장이 실시하고 감사관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검토한다.</p> <p>③ 점검 훈련시 수첩은 감사관이 이를 확인한다.</p> <p>제 27 조(감사시행) ① 종합감사는 발견적이고 지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감사는 질서 정연하고 수법적인 행동으로서 피검사 기관의 평상시 근무 상태하에서 전반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전감사관이 일선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
--	--

39-10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다면, 회계 감사와 장비 감사는 감사 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8 조(강평자료제출) ①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현지에서 사무의 개선 또는 권장사항, 요조 사사항, 요시정사항, 현지 교정사항 및 요건의 사항으로 구분 이를 일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사항 시정사항 및 현지 교정사항은 감사관이 각각 2부를 작성 피감사 기관장에게 교부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29 조(평정용어의 정의) ①권장사항은 경찰 기본업무 수행에 있어 성실한 근무와 창의 연구로서 그 실적이 타에 비해 월등하여 그 체도 사회상 쾌락을 만한 사항을 말한다.

②조사사항은 중요 위법이나 결합 사항으로서 계속 진상을 규명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실을 말한다.
③시정사항은 업무상태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또는 방침에 위배되어 있으며 명백한 규정 등의 위배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현상태

가 비효율적 이거나 비경제적이라 고 판단된 사항을 말한다.

④현지 교정사항은 경미한 위법 또는 결합사항을 말한다.

⑤전의사항은 감사기관의 장의 권한의 사항으로서 상부 규정이나 방침을 적용하는 경우(집행, 실시)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모순이나 불이익을 배제함과 법령 규정 및 방침이 없거나 불비함으로 인하여 업무능률이 저하 또는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감사관이 전의한 사항을 말한다.

제 30 조(감사결과평정) ①감사 결과에 대한 평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90 점 - 100 점
2. 우 80 점 - 89 점
3. 양 70 점 - 79 점
4. 가 60 점 - 69 점
5. 불가 59 점 이하

②평정의 산출은 소수점이 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 31 조(감사결과조치) ①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표창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업무 수행을 발전하였을 때에는 현지 평가서 표창할 수 있도록 판계 서류를 구비하고 경찰국장에게 상신 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 불가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휘관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3개월내에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39-11

③피감사 기관의 장은 규정 제 10조에 의한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정 조치 결과를 30일이내에 경찰국장에게 중징서 첨부 보고하여야 하며 그 지시 사항이 피감사 기관의 권한의의 사항이거나 또는 시정할 수 없는 비위 결합동인 경우에는 전의 사

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2조(보칙) 이 감사 규정외에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감사 규정 및 치안 행정 감사 시행 세칙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수감표

부서명	계급	성명	사무분장내용	근무기간	비고

39-12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적승인

1. 진설부고시제 320호('78.10.25)로
결정고시된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을 다음과 같이 지적
가. 도로지적승인초서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
부고시제 41호('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파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
정비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2.20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광로		56	50	1,450	대 2-45	남서울대광원	
"	"		71	100	550	광로 55종점	"	
"	대로	2	60	30	440	"	대 2-35	

나. 광장지적승인초서

구분	시설명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하리광장	111	파천면 하리 352 일대	20,000	

별첨 도면표시와 갈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아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파와 관할구청 도시정비파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78. 12. 21.

서울특별시장

제 690 호 시 보 1978. 12. 22 39-13

구 分	동 굵	류 별	번 호	쪽 원	연 장	노 선 조 서		() 결정구간
						기 절	종 절	
자적 승인	중로	I	48	20m	(1,000) 860m	도봉구반동(대 3-40)	도봉구반동산 27-6	750 ^원 자적승인 110 ^원 자적변경
"	"	"	78	"	(4,250) 400m	도봉구상문동 206	도봉구상문동 50-2	
"	"	"	83	"	(2,250) 150m	도봉구공릉동 166B.I	공릉동 23(중 2-124)	
"	"	"	137	"	1,000	금호동 4 가(중 1-135)	성수동 1 가 685-34 " 685-475	(대 2-50)
"	"	2	82	15m	(1,000) 250	면목동 472-6	면목동 108-1 (대 3-47)	
"	"	"	97	"	(1,000) 1,100	장4-6 340	장4-6 240-?	
"	"	"	99	"	(1,200) 520	홍은동 48	홍은동 48(홍제국교)	
"	"	"	119	"	500	동대문구연북동 (대 3-42)	동대문구연북동 (대 2-43)	
"	"	3	62	12m	750	도봉구미아동 560-30	도봉구미아동 126-337	
"	"	"	71	"	(3,250) 440	동촌동산 64-6	동촌동 189-64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4 호

1979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9
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
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19 . . .

회 계	별	예 산 액
일 반 회 계		317,825,000 천원
복 릴 회 계		175,905,500 "
국 민 주 택 사 업 비		28,702,000 "
주 대 개 향 사 업 비		8,110,000 "
토 지 구 회 정 리 비		12,233,000 "
하 수 처 리 장 비		3,000,000 "

39-14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회 계 별	예 산 액
유료도로비	4,593,500 천원
의료보호기금	1,086,000 "
재해구호비	500,000 "
수도사업비	41,867,000 "
지하철운수사업비	71,779,000 "
병원사업비	4,035,000 "
* 도시재개발사업기금	46,605,700 "

◎ 서울특별시 고시제 67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5 호
('76.9.6)로 시설 결정 및 지
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
부 고시 제 41 호 ('77.3.16)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 1파와 도봉구청 시민
봉사실에 각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8. 12. 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도봉구수유동단 12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
업(학교) 시행허가 한국 신학대학
3. 면적 및 규모 : 2,762㎡(836평)
4. 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도봉구
수유동단 129 학교법인 신학대학 이준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8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
나. 준공예정일 : 1979. 5. 30.
6.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별첨(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
1파와 도봉구청에 보관함.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39-15

◎ 서울특별시고시제 676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5호
(78.10.28)로 결정된 도봉구 관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2.22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지적승인 조서

구 분	지 설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공공지	수유동 567-58의 5필지	353坪 (107평)	4.19 공원입구

토지조서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수 유 동	567-81	대	13坪(4평)	1. 결정세도면과
	567-57	"	73坪(22평)	일치
	567-58	"	53坪(16평)	2. 확정 축량으로
	568-18	"	46坪(14평)	지적상이
	568-42	"	79坪(24평)	
	568-43	"	89坪(27평)	
	제		353坪(107평)	
별첨	도면 표지와 같음(도면생략).			

39-16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 서울특별시고시제 677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1. 건설부 고시 제 131호(76.8.2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6호
(76.10.2)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
된 강남구 잠원동 아파트지구
(제 1-4주구) 일 부지역에 주택건설
촉진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기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및 강남구청(시민
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1978.12.21

서 울 특 별 시 장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내역

- 가. 사업시행자 : (주)한양주택 배종열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강남구 잠원동 137-20호의 일원
(별첨 지번조서 참조 :
16, 671.9평)

다. 사업계획개요

- 사업명 : 아파트 및 주구센타
1동(5층) 건설
○ 사업규모 : 아파트 22~42평형
636세대

○ 사업비 : 27,310,000천원

○ 사업기간 : 78.12 ~ 80.6

라. 관계도면의 열람 기간 :

78.12.22 ~ 78.12.28(7일간)

마.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주택행정과)
강남구청(시민봉사실)

지 번 조 서

동명	지번	지번급 부호	면적(평)	소유자	
				성명	주소
잠원동	137-20	43-1(내)	544.7 중 50	국	
반포동	242-13	67	69.7	한신공영(주)	
1. 지구	63-1 제비자 1	67	43	시유지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39-17

동명	지번	지번급 부호	면적(평)	소 성 명	유 자 주 소
반포동	242-4	67 (7)	94.2	합 경 자	관악구방배동 1-11
"	242-6	66	268.5	한신공영(주)	
"	242-4	66 (4)	307.8	합 경 자	관악구방배동 1-11
"	242-1 -3	66 (4)	721.3 중 660	(주)한양주택	
"	241-1	66	194.4 중 80	(주)한양주택	
잠원동	118 120	66 (4)	629.3 중 5	(주)한양주택	
1 지구	제비지 1	91	345	시 유 지	
반포동	236	91 (대)	13.8	한신공영(주)	
"	264-20	91 (7)	123.7	한신공영(주)	
"	264-3	91 (7)	409.5	(주)한양주택	
"	241-3 -5	92	682.2	전봉자 의 5	중구 필동 3가 39-16
"	241-4	92	392.4 중 293	한신공영의 1	
1 지구	제비지 1	90	131	시 유 지	
"	제비지 2	90	339.7 중 220	시 유 지	
반포동	208-1 -3 210-4 233-2	90	133	한신공영(주)	
잠원동	1-10	90 (7)	93.8	(주)한양주택	
"	1-31	90 (7)	93.8	오 무 영	중구 북창동 89
반포동	238-1	90 (4)	44	(주)한양주택	
"	232	90	300.9	(주)한양주택	
"	231	90	330.9	민 성 기	강남구반포동 231
"	230	90 (7)	269.4	반 창 복	마포구현석동 1
잠원동	136-9	90-1	190.7	정덕상의 1	서대문구홍은동 402-64
1 지구	제비지 1	90-1	3	시 유 지	
잠원동	137-7	90-1	189.1	오 명 근	영등포구구로동 733-36

39-18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동명	지번	지번급 부호	면적(평)	소유자	
				성명	주소
장원동	136-10	90-1	190	오 규 원	중구 북창동 89
반포동	241-7 -8	89 (가)	264.5	한신공영(주)	
"	206	89	226.1	"	
"	207-1 -3	"	123.2	(주) 한양주택	
"	207-12	"	93	"	
"	207-5	"	56	신 춘 화	성북구 장위동 233-479
"	207-7	"	53.9	(주) 한양주택	
"	207-8	"	78.4	"	
"	207-9	"	78.4	"	
"	207-10	"	78.4	"	
"	208-2	"	685 중 682	"	
"	230	89 (나)	52.7	박 창 복	마포구 현석동 1
"	208-4	89	54.8	하 억 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67
"	241-8	93-1(나)	310.3 중 314	한신공영(주)	
1. 지구	채비지 1	93-1	220 중 180	시 유 지	
반포동	205	93-1(나)	425 중 220	(주) 한양주택	
"	207-2	93-1	140	이 인 우	서대문구 흥제동 5-46
"	238-1	93-1(나)	348.9 중 5	(주) 한양주택	
"	209	93-1(가)	306 중 45	"	
"	226-2	106	286.8	송 원 회 의 2	서대문구 연희동 344-34
"	227	106 (가)	408.8	(주) 한양주택	
"	225-4	106	715.6	이 필 우	중구 육정동 28-28
"	209	105 (나)	649.3	(주) 한양주택	
"	238-1	105 (나)	208	"	
"	210-2 -3	105	441.1	"	
"	232	105 (나)	629.7	온 귀 주	관악구 동작동 307
"	210-1	104	290.2 중 220	(주) 한양주택	

제 690 호 시 보 1978. 12. 22 39-19

동명	지번	지번 금부호	면적(평)	소유자	
				성명	주소
반포동	212	104(기)	403.1	온 귀 주	분야구 동작동 307
"	211	104(4)	634.58	"	"
"	225-1	107	587.4	이 부 남 외 4	중구 신당동 347-263
"	225-3	"	208.8	박 준 일 외 2	성동구 행당동 12-9
"	221-1	"	50	김 인 식	중구 신당동 405-5
"	221-2	"	180.8	"	"
"	221-3	"	100.8	"	"
"	221-4	"	50	"	"
잠원동	3-1	"	35.9	양 민 날	성북구 장위동 74-120
"	3-5	"	42	한 신 공 영(주)	
"	3-6	"	47.9	민 성 기	서대문구 응암동 126-26
"	3-4	"	47.9	차 병 로	성북구 삼선동 2가 168
반포동	234	109(기)	364.7	한 신 공 영(주)	
잠원동	1-42	109	65.4	반 기 영	잠원동 1-42
"	1-234	109	233.8	한 신 공 영(주)	
반포동	236	109(기)	241.9	"	
잠원동	1-8	109(4)	495.4 중	"	
"	1-127	"	260	"	
"	1-226	109	50.6	강 일 우	용산구 한강로 1가 275
"	1-227	"	51	지 을 남 외 3	" 한강로 2가 15
"	1-228	"	50.4	김 상 운	강남구 풍월동 1-228
"	1-225	"	53	김 춘 수	
"	1-34	"	52.4	박 지 혼	강남구 잠원동 1-34
"	1-230	"	52.5	권 점 육	" 1-230
"	1-229	"	52.6	조 부 남	" 1-232
"	1-231	"	52.4	강 정 기	" 1-231

39-20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동 명	지 번	지 번 급부호	면적(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잠원동	1- 232	109	56.4	조 부 남	강남구 잠원동 1-232
반포동	214- 4	110	129.9 ^주	김 철	용산구 이촌동 307-7
신사동	442- 3	110	125 ^주	조 일 문	대전시 원동 20-8
반포동	214- 1	108	140	정진환의 1	용산구 한남동 653-70
"	214- 2	108	131	박 숭 열	종로구 인사동 194
"	215- 1	108	309.3	백승복의 1	마포구 서교동 479-6
"	216- 1	108	599.1	김 인 식	중구 신당동 405-5
신사동	439- 1	140(7)	45.7 ^주	조 용 시	관악구 동작동 13-7
			115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8 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1. 전설부 고시 제 131호(76.8.2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6호(76.10.2)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부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주택행정과) 및 영등포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에 공한

다.

1978.12.21
서울특별시장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내역
 - 가. 사업시행자 : 라이프주택(주)
조내벽
 -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1-290번지 일원
(별첨 54필지 6,334평)
 - 다. 사업계획개요
 - 사업명 : 아파트 블루 주구상가
전립
 - 사업규모 : 아파트 24-44평형
252세대
주구 셀타 1동 3층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39-21

• 사업비 : 10,803,360천원
 • 사업기간 : 79.2.1 ~ 80.12.31
 라.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
78.12.22 ~ 78.12.28 (7일간)

마.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 서울특별
 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영등포구청 (사업용사실)

여의도아파트 지구개발시행지침목록

동명	지번	면적	소유자		
			주	소	성명
여의도동	1-140				
"	1-653	514평	강남구 잠실 2동아파트 279동 105호		교통민의 2인
"	1-654				
"	1-655				
"	1-654	145평	서대문구 불광동 359-20		안 월 준
"	1-655	149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 내 백
"	1-656	145	"		"
"	1-657	145	"		"
"	1-658	149	"		"
"	1-659	116	마포구 신수동 89-31		이 창 수
"	1-660	110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 내 백
"	1-661	110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 15동 403호		노 정 호
"	1-662	110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 내 백
"	1-663	110	"		"
"	1-270	115	영등포구 화곡동 362-88		김 재 순
"	1-271	115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 내 백
"	1-272	115	"		"
"	1-273	115	"		"
"	1-274	114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이 상

39-22 제 690 호 시

보 1973.12.22

동명	지번	면적	소유자		성명
			주	소	
여의도동	1-275	114평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초내복
"	1-276	115 "		"	"
"	1-277	115 "		"	"
"	1-278	116 "		"	"
"	1-279	116 "		"	"
"	1-281	111 "		"	"
"	1-280	116 "		"	"
"	1-281	116 "		"	"
"	1-282	116 "		"	"
"	1-283	114 "		"	"
"	1-284	39 "		"	"
"	1-285	102 "		"	"
"	1-286	75 "		"	"
"	1-289	14 "		"	"
"	1-288	17 "		"	"
"	1-287	115 "	마포구 서교동	342-9	오금순
"	1-286	115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내복
"	1-142	111 "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23	최호만
"	1-290	97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내복
"	1-291	30 "		"	"
"	1-294	86 "		"	"
"	1-295	116 "		"	"
"	1-296	114 "		"	"
"	1-297	114 "		"	"
"	1-298	115 "		"	"
"	1-299	115 "		"	"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39-23

동 명	지 번	면적	소 용 자		성 명
			주 소	소	
여의도동	I-300	112 평	영등포구 여의도동서울아파트 1동 1002호		전 윤 승
"	I-301	59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 내 백
"	I-293	52 "		"	"
"	I-160	19 "		"	"
"	I-292	3 "	영등포구 여의도동서울아파트 1동 1002호		전 윤 승
"	I-1015	356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 내 백
"	I-1016	216 "		"	"
"	I-1017	174 "		"	"
"	I-1018	352 "		"	"
계			54 평지	6,334 평	
라이프주택소유			41 평지	4,879 평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9 호

관계인에게 보인다.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

1978.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39 호 (78.12.7)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 허가를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이해

-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4-2, 794-4 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 3)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 가 186 번지 일례선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 가 196 번지 최기우
- 4) 사업기간 : '78.12.22-'79.1.10

39-24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 5) 면적 : 1,436.7 평방미터
(434.6 평)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명세 : 별첨(생략)
7) 위치 및 계획면도 : 별첨(생략)
8) 공사설계도면 :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파
지 적 승 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를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16)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 시청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78.12.22.

서 울 특 별 시 장

도로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증로	2	141	15	1,400	세종로 (중 1-1)	적선동 52-2	충 2 - 141 노선 1,400m 는 실거리로 500m임 노선연장 (300m)
변경	"	1	202	20	850	"	사직동 (대 1-40)	포함정산거리 850m임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1 호

도시계획시설(광장 및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1. 건설부고시 제 145 호 (78.6.15)
및 제 320 호 (78.10.25)로 결
정고시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광장 및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2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16)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39-25

2파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보인다.

1978.12.23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광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지 선 명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 철	이수광장	81	관악구동작동연대	113,000	
변경	"	81	"	108,000	

나. 도로지적승인조서

동급	류 별	번호	북 원	연 장	시 견	총 견	비 고
광로		61	50	2,490	동작동이수광장	사당동 82 광장	
"		55	50	5,000	사당동 82 광장	시흥군판문리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⑩서 울 특 별 시 고 시 제 68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45 호

(78.10.20)로 결정고시된 도시

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

획법 제 13조 및 갑설부고시

제 41호 (77.3.16)의 권한위임규

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
시한다.2. 본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파와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78.12.23.

서 울 특 별 시 장

39-26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가.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2		8 미터	430 미터	이화동 10-2	이화동 9-312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⑤) 서울특별시고시 제 683 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1. 건설부고시 제 131호 (76.8.2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56호
 (76.10.2)로 아파트지구 지적
 승인된 강남구 반포동, 서초동아파
 트지구 (제 3-2 주구) 일부에 대하
 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조 등법시
 행령 제 24조, 제 45조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아래
 와 같이 지정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및 강남구청 (시민
 용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1978. 12. 21.

서울특별시장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내용 :

가. 사업시행자 :

삼호주택(주) 조용시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강남구 반포동 133 번지의 일원
 (제 3-2 주구) 일부지역 (목록별
 첨 : 44,208.1평)

다. 사업계획개요

○ 사업명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규모 :

아파트 25평형, 2,500세대

○ 사업비 : 61,891,480천원

○ 사업기간 :

79. 1. . ~ 80. 12. 31

라.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

78. 12. 22 ~ 78. 12. 28 (7일간)

마.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주택국 (주택행정과)

강남구청 (시민용사실)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39-27

○ 아파트지구 지적 및 사용 동의내역				사용동의여부 및 동의 일자	
지 번	면 적	소 유 주			
		성 명	주 소		
반포동 133	229.2	고 원 도	종로구신문로 1 가58-9		
서초동 111					
112					
113-1	가 1,095.5	주 부 통	도봉구미아동 534-105		
-2					
119					
반포동 120	195.9	정 풍 구	용산구한남동 1-304		
-452-6	356.5	"	"		
-7					
서초동 106-6					
108-3	가 193.7	정 풍 구	용산구한남동 1-304		
109-2	나 152	"	"		
110-1					
145-2	86.2	윤 중 전	성북구동선동 1 가 82		
가 118.9					
143	나 289.3	삼 호 주 대	관악구동작동 13-3	신청인 소유	
다 212.4					
144-1	가 106.5	이 정 순	김포면강정리 24		
나 151.6					
144-2	219.9	윤 창 남	중구신당동 236-41		
-3	155	이 소 영	중구신당동 349-75	3,582.6(620.6)	
151-1	가 419	정 통 구	용산구한남동 1-304		
나 241					

39-28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지 번	면적	소 유 주 소		사용동의여부 및 등의 일자
		설 명	주 소	
서초동 108-2 106-5 109-1	353.8	삼호주택	관악구동작동 13-3	신청인 소유
반포동 450 451 439-2 444-1				
서초동 124 122 123-2 123-4	13,386.9	조 용 시	관악구동작동 13-7	사용동의
반포동 436-3				
서초동 140-2 118-2 125 121 118-3 -4 140-1 123-1	6,714.3	조 봉 구	관악구방배동 1-11	사용동의 21,145(20,455)
반포동 447 449 437 438 436-2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39-29

지 번	면 적	소 유 주		사용동의여부 및 동의 일자
		성 명	주 소	
448	2,004.3	조 봉 구	관악구방배동1-11	사 용 동 의
452-2				
서초동118-1	332.8	서 울 석 유	중구장충1 가 31-1	
126-8	184.4	문성환외 3인	강남구반포동 470	
126-2 {가	135.5	삼호주택 조용시	관악구동작동 13-3	신 청 인 소 유
{나	172.8			
126-1	84.8	이 조 경	도봉구수유동 130-20	
139	150.3	삼호주택 조용시	관악구농작동 13-3	신 청 인 소 유
126-3 {가	373.5	"	"	"
{나	227.5			
145-5 {가	294.5	"	"	"
{나	215.2			
138	96.2	정 배 근외 1인	신사동공무원 APT 1동 756호	
146-2	181.9	임 명 환	강남구서초동 146-2	
149-2 {가	154.7	삼호주택 조용시	관악구동작동 13-3	신 청 인 소 유
{나	225.9	"	"	"
127	187	전 양 기 업	중구충무로 2 가 5	
136	150	삼호주택 조용시	관악구동작동 13-3	신 청 인 소 유
136-7 {	142.5	"	"	"
-8}				
136-1 {	142.5	"	"	"
-9}				
128	233.2	김 익 춘	성동구홍익동 145	
126-4	264	민 현 식	성북구종암동 165-36	
-5	145.2	송 순 봉	서대문구남가좌동 145-87	

39-30 제 690 호 시

보-1978.12.22

지 번	면적	소유주		사용동의여부 및 동의 일자
		성명	주소	
서초동 126-7	가 140.1			
	나 122.5	박 현식	성북구종암동 165-36	-
	다 101.2			
126-11	343.7	삼호주택조용시	관악구동작동 13-3	신청인 소유
-9	189	신상철	성북구안암동 1 가 82	
-6	165.4	유하민	서대문구용암동 102-77	
-10	130.5	정질순의 1인	울산시우교동 153-2	
137	93.6	삼호주택조용시	관악구동작동 13-3	신청인 소유
129	339.8	윤경선의 1인	서대문구현저동 산5번지	
130	가 478.6	"	"	
	나 264			
산 189-1	1,667	한양주택	영등포구여의도동 1-885	
	-3	이규역	용산구갈월동 14-82	
반포동 312-3	380	서울시		
	-2	2,765.8	"	
	311-1	373.2	"	
327-2	44.4	"		
312-1	66.8	안재국	중구황학동 72-2	
313-1	179.2	라이프개발	영등포구여의도동 1-146	
332-2	120	서울시		
-3	709	"		
366-1	576.7	"		
367-1	416.5	"		
380-1	81.9	"		
-3	178.2	"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39-31

지 번	면 적	수 용 자		사용동의여부 및 동의일자
		성 명	주 소	
반포동	378-1	114	서 울 시	
"	368-3	2,270	한 양 주 택	영등포구 여의도동 1-385
"	152	60.5	김윤우의 1명	중구 신당동 405-27
"	106-5			
"	108-24	121.6	삼호주택조용식	관악구 동작동 13-3
"	109-1			설정 일자
"	334-1	398	서 울 시	
"	332-1	75.2	"	
"	427	202.4	정 한 용	강남구 도곡동 28-39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4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62 호(78. 9. 11.)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기간 연기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변경허가하였어 도시계획법 제 24조와 동법 제 26조 및 전설부고시 제 41호(77.3.16.)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책과에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1978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자 : 강남구 양재동 산

73-3의 10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

(주) 금성사 주차장설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282번지

(주) 금성사 대표이사 박승환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착공 : 1978년 9월

변경착공 : 변경허가후 10일이내

당초준공예정일 : 1978년 10월 31일

변경준공예정일 : 1979년 6월 30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

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의의 권리

명세서(생략)

39-32 제 690 호 시

보 1978. 12. 22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5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34 호(78.7.5)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변경 및 사업기간 연기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를 변경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 제26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양재동 539 번지의 17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설

다. 사업의 규모(면적) : 5,971 평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당초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가 9 번지
전양기업(주) 대표 손용현

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가 9 번지
전양기업(주) 대표 방지영

마.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일자 : 1978. 7. 10

당초준공예정일 : 1978. 11. 30

변경준공예정일 : 1979. 4.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6 호

노거수지정해제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수목을 노거수 지정해제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8. 12. 26

서울특별시장

1. 지정구분 및 번호 : 노거수제 81호

2. 소재지 : 중구 도동 2 가 66 번지

3. 소 유 : 국유지

4. 해제사유 : 자연고사

5. 해제년월일 및 해제기관 :

1978. 12. 26

서울특별시장

보 1978.12.22 39-33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477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
처분계획변경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228호(78.5.23)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고 AED차관사업으로 시행중인 욕수1구역에 대하여
2. 동구역내 공공시설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 토지에 한하여 형태 및 면적변경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41조 및 65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3. 공람기간내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본 공고내용으로는 사용수익을 할수 없으며 본 공고에 대한 서류승인은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에 비치하고 공람한다.

1978.12.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478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46호(78.5.

29)로 시설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541호(78.10.13)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동일 제 57조의 2 정과 전설부고시 제 41호(77.3.16)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파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2.21.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사업 완료내역)

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이동 290-1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대홍교통주식회사 정류장)
3. 사업시행면적: 2,217 평방미터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방이동 267번지
5. 사업시행기간: 78.10.15 ~ 78.11.15.
6. 준공도면: 생략

39-34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 서울특별시 공고제 47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3 호(78.8.26)
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 제 57 조의 2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파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2.21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사업 완료내역)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지동
611-3의 10필지

● 서울특별시 공고제 480 호

제 2 종전기공사업 면허실효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호 및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가 실효되었기 공고함
다.

1978.12.19

서울특별시장

다음

종별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면허실효일자
제 2종	제 30 호	창일산업(주)	양윤식	종로구 낙원동 284-6	78.12.19

● 서울특별시 공고제 482 호

영동 1,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 34 조 경 공립 공고

1. 건설부 공고제 72 호(71.8.20) 및
제 38 호(77.4.2)로 변경 시행인

가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영동
1,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
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 제
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제 690 호 시 도 1978.12.22 39-35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는 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출 용한다.

* 벤 경 내 역 *

단위 : 평

지구명	시행면적	벤 경			비 고
		면적	위	체	
영동 1 지구	5,128.091	678,989	영동아파트지구 1주구 및 3주구		아파트지구내 공 공지설변경
영동 2 지구	3,954.237	463,479	영동아파트지구 2주구 및 4주구		*

1978.12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483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 환로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5 호 (78.7.5)
로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
장) 시행허가된 도봉구번동 499-2
의 1필지에 대한 한성운수주식회사
시내버스주차장부지 정지공사가
로되었기 도시계획제 57조 2항 및
제 8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2.22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번동 499-2 1필지
2. 사업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한성운수(주) 시내버스주차장정지공사
3. 사업시행면적 : 1,683평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번동 455-2
한성운수(주) 김 인석
5. 사업의 차수 준공 년월일
가. 차수년월일 : 1978.7.5
나. 준공년월일 : 1978.12.20
6. 공사완료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 제 486 호

K S 표시정지처 분해제 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KS

39-36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표시정지처분된 아래 업체에 대해
동 처분을 해제하고 표시품 생산을
제속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규칙에
21조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78.12.2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허가번호: 제 1401 호
나. 허가일자: 76.12.30
다. 제조업체명: 일진금속(주)
라. 대 표 자: 허 진 규
마.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45
바. 규격 번호: KSD6759
사. 품 명: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아. 규 격: 5종 보통급

자. 처분일자: 78.6.28
차. 해제일자: 78.12.22

◎ 서울특별시 공고제 487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 8조 및 동법
시행령제 18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전
기용품 제조업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조규정에 의하여 취소업체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8.12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업 체 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 재 지	허가일	제조구분	취소사유
(주)신아산업	성 찬 용	5-20-가	영등포구 특산동 203	72.12.9경신	소형전동기류	법 제 7 조 항위반

◎ 서울특별시 공고제 488 호

공 인 의 인 영

공인신조사용증인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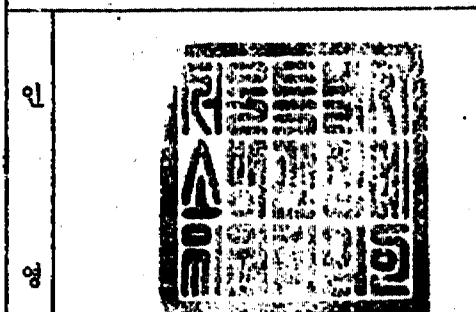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
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제 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8.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개시일자: 1978.12.23

2. 인 영: 다 음



공인명: 서울특별시 소방관정제 위원회 직인

인		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와 공람에 의한다.
영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배 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12 서울특별시장
공 고 명	제 1 인	공 랄 개 요
	● 서울특별시 공고 제 48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 사업장 위치 : 성북구 하월곡 1동 88번지 주변도로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하월곡 1동 88번 지 주변도로 정비 공사 3. 사업의 규모 : B = 6 m L = 286 m A = 12.1 a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5. 사업의 학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일 - 78.12.2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협정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 성북구 정릉동

공사 토지 가격 조서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수 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성북구 하월곡 1동 88번지 15	도	528 ㎡			서울특별시
2	하월곡 1동 88번지 556	·	84 ㎡	성동구 사근동 159 정읍군 정주읍 수정리		정 봉 국 정 상 우

39-38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 서울특별시 공고제 490 호

도시재개발사업부호제 4, 5지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공탁공고

서울특별시고시제 198 호 (77.6.28)에
의거 재개발사업실시 계획인가된 부
호제 4, 5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사업기간자금조달
계획) 규약의 일부를 변경코자 도시재
개발법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공탁공고합니다.

1978.12.26

서 울 특 별 시 장

변 경 내 용

○ 사업시행기간

당초 : 77.8.1 - 78.12.31

변경 : 77.8.1 - 80.6.30

사유 : 공사기간 부족으로 기한 연장

○ 사업시행계획서

(2) 재원조달계획

당초 : 당시에서 직접 투자하여 현
제 소유하고 있는 코오롱빌딩(종로
구 흥의동 35-34)를 매각한다.

변경 : 당시와 삼경물산(주)(지구내
토지소유자)는 공동으로 총사업비를
투자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사유 : 물가상승의 이유로 건축비의
부족

○ 규 약

제 8조(비용의 부담)

당초 :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
하기로 한다.

변경 :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
생하는 비용 및 건축비는 시행자
(주)코오롱과 삼경물산(주)가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

사유 : 상 등

○ 공탁장소

서울특별시도시정비국도시정비과

(75-6827)

(주)코오롱(나이통) (75-7181, 741-3492)

○ 서울특별시 공고제 491 호

도시재개발사업 광화문구역 사업
시행계획변경 공탁공고

서울특별시고시제 127 호 (77.4.27)에
의거 재개발사업실시 계획인가된 부
호제 4, 5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코자 도시재
개발법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공탁공고 한다.

1978.12.26

서 울 특 별 시 장

제 690 호 시

보 1978.12.22 39-39

변경 내용	2. 풍랑장소
<p>1. 사업시행기간 당초 : 77.4.27 - 78.12.31 변경 : 77.4.27 - 80. 6.30 사유 : 부지매입부진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공사기간 지연</p>	<p>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75-6827)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건축부 (70-6858)</p>